

5. 都市交通整備促進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107號 1990年 9月 25日 公布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통영향평가의 대상 및 교통영향평가기관)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용역업자

2. 교통개발연구원

3. 국토개발연구원

4. 도로교통안전협회

④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3항의 교통영향평가기관중에서 교통영향평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조정·보완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시설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변경
2. 주차장의 추가 설치
3. 기타 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조정·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의3(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조정·보

완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의 설치비용: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의한다.

2. 기타 조정·보완에 필요한 비용: 당해 사업 또는 시설계획을 시장등이 직접 조정·보완함에 소요되는 실비의 산정에 의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을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을 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비용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9조의4(재평가의 사유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인근 도로에서의 자동차 평균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2. 인근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평균지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재평가는 시장등이 직접 행하거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제9조제3항의 교통영향평가기관이 행한다.

④제9조의3의 규정은 재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조정·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등이 정하는 기일까지 시장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재평가의 내용등 재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범위는 도시교통정비지역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교통권역에 포함되는 시를 제외한다) 관할구역안의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제9조의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대지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이상 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제9조의6(부담금의 비부과대상) ①제9

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8호의 시설물을 유상 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주한 외국정부기관6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주차장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6. 종교시설

7.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학교의 교육용물

8.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9.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

10.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한 지방문화사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②제1항 각호의 시설물을 당해 시설물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7(부담금의 부과기준) ①단일용

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제1항의 산식중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3.3제곱미터당 1천원으로 하며,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③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

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제9조의8(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한다.

제9조의9(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의10(부담금의 징수방법등) ①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9조의9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야 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의11(가산금) 법 제1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9조의12(대장의 기록·관리) 시장등은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13(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의10 및 제9조의1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등”은 “구청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등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

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기능”을 “업무범위 및 기능”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제1항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기능”을 “업무범위 및 기능”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

장은 교통부의 도시교통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 또는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9인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교통영향심의시 중앙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3(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결과의 심의
2.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 제목 “(교통영향평가전문위원회)”를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5인이상”을 “위원중 7인이상”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
영향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은 지방심의
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방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지방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
영향평가 결과의 심의
2.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
항
3. 재평가 대상의 결정
4. 재평가 결과의 심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준용) 제10조제4항·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
정은 지방위원회·중앙심의위원회 및 지
방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제1항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대통령령제12216호 부칙 제3호의 제목중
“평가자”를 “교통영향평가기관”으로 하
고, 동조분문중 “제9조제2항”을 “제9조
제3항”으로, “1991년 12월 31일”을
“1993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1

호중 “기술용역업을 하는 자”를 “기술
용역업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부담금의 부과·징수상의 특례) 제9
조의9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도에 부
과·징수하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1990년 10월 15일로 하고,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별표 1]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시설

(제9조제1항 관련)

1.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별
심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
상사업중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교통영향
평가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
업을 제외한다.

가. 신규사업의 시행

사 업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대상			
		서울특별시		기 타 지 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1,000,000㎡	100,000㎡	150,000㎡	70,000㎡	100,000㎡
	이상인것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미만인 것	미만인 것	미만인 것	미만인 것	미만인 것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1,000,000㎡	100,000㎡	150,000㎡	70,000㎡	100,000㎡
	이상인것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미만인 것	미만인 것	미만인 것	미만인 것	미만인 것
(3)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의 개발사업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1,000,000㎡	50,000㎡	70,000㎡	30,000㎡	50,000㎡
	이상인것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미만인 것	미만인 것	미만인 것	미만인 것	미만인 것
(4)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1호 다목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1,200,000㎡	100,000㎡	150,000㎡	70,000㎡	100,000㎡
	이상인것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미만인 것	미만인 것	미만인 것	미만인 것	미만인 것
(5)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제2호 각목	제2호 각목	제2호 각목	제2호 각목	제2호 각목
	의 해당 시설의범위	의 해당 시설의범위	의 해당 시설의범위	의 해당 시설의범위	의 해당 시설의범위

사 업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대상			
		서울특별시		기 타 지 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6)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항의 산업기지 개발사업	부지면적 1,200,000㎡ 이상인것	부지면적 100,000㎡ 이상 1,2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 150,000㎡ 이상 1,2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 70,000㎡ 이상 1,2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 100,000㎡ 이상 1,200,000㎡ 미만인 것
(7) 공업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면적 1,200,000㎡ 이상인것	부지면적 100,000㎡ 이상 1,2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 150,000㎡ 이상 1,2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 70,000㎡ 이상 1,2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 100,000㎡ 이상 1,200,000㎡ 미만인 것
(9)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1호 다목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지면적 1,000,000㎡ 이상인것	부지면적 100,000㎡ 이상 1,0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 15,000㎡ 이상 1,0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 70,000㎡ 이상 1,0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 100,000㎡ 이상 1,000,000㎡ 미만인 것
(10) 항만법 제2호제1항의 지정항만의 건설	연간하역능 력4,000,000 톤 이상인 것	연간하역능 력500,000 톤 이상 4,000,000톤 미만인 것	연간하역능 력500,000 톤 이상 4,000,000톤 미만인 것	연간하역능 력300,000 톤 이상 4,000,000톤 미만인 것	연간하역능 력300,000 톤 이상 4,000,000톤 미만인 것
(11) 철도법 제2조제1항의 철도(화물전용 수송을 위한 철도를 제외한다)의 건설	전 체				
(12)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지하철도의 건설	전 체				

사 업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대상			
		서울특별시		기 타 지 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13) 항공법 제2조제4항 의 비행장(군용비행장 을 제외한다)의 설치	여객청사연 면적 4,000㎡ 이상인 것	여객청사연 면적 5,000㎡이상 40,000㎡ 미만인 것	여객청사연 면적 6,000㎡이상 40,000㎡ 미만인 것	여객청사연 면적 2,000㎡이상 40,000㎡ 미만인 것	여객청사연 면적 3,000㎡이상 40,000㎡ 미만인 것
(14) 자동차정류장법 제2 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건설 (가) 여객정류장	정류장시설 의 연면적 80,000㎡ 이상인 것	정류장시설 의 연면적 7,000㎡이상 80,000㎡ 미만인 것	정류장시설 의 연면적 10,000㎡이상 80,000㎡ 미만인 것	정류장시설 의 연면적 5,000㎡이상 80,000㎡ 미만인 것	정류장시설 의 연면적 7,000㎡이상 80,000㎡ 미만인 것
(나) 화물정류장	부지면적 120,000㎡ 이상	부지면적 10,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 15,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 5,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 7,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15)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 (가) 고속국도	길이 40km 이상인 것	길이 3km 이상 40km 미만인 것	길이 10km 이상 40km 미만인 것	길이 3km 이상 40km 미만인 것	길이 10km 이상 40km 미만인 것
(나) 일반국도	길이 40km 이상인 것	길이 3km 이상 40km 미만인 것	길이 10km 이상 40km 미만인 것	길이 3km 이상 40km 미만인 것	길이 10km 이상 40km 미만인 것

사 업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대상			
		서울특별시		기 타 지 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다) 지방도	길이 40km 이상인 것	길이 3km 이상 40km 미만인 것	길이 10km 이상 40km 미만인 것	길이 3km 이상 40km 미만인 것	길이 10km 이상 40km 미만인 것
(16)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4호의 도시계획 사업중 다음 각호의 사업 (가) 도로(서울특별시· 적할시의 경우는 폭30m이상, 기타지역 의 경우는 폭20m 이상인 도로에 한한다) 의 건설	길이 40km 이상인 것	길이 3km 이상 40km 미만인 것	길이 5km 이상 40km 미만인 것	길이 3km 이상 40km 미만인 것	길이 5km 이상 40km 미만인 것
(나) 전문대학·대학· 대학교의 설립	학생정원이 40,000명 이상인 것	학생정원이 3,000명 이상 40,000명 미만인 것	학생정원이 4,000명 이상 40,000명 미만인 것	학생정원이 2,000명 이상 40,000명 미만인 것	학생정원이 3,000명 이상 40,000명 미만인 것
(다) 공용의 청사의 건설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3,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사 업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대상			
		서울특별시		기 타 지 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라) 자동차검사시설의 설치	부지면적이 120,000㎡ 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15,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20,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7,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15,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마) 통신시설의 건설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바) 유통업무설비의 건설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6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사) 공원의 건설	부지면적이 600,000㎡ 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4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6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4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6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야) 유원지의 건설	부지면적이 600,000㎡ 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4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6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4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6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사 업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대상			
		서울특별시		기 타 지 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17)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계획지	시설계획지	시설계획지	시설계획지	시설계획지
	구의면적이 2,000,000㎡ 이상인 것	구의면적이 200,000㎡ 이상 2,000,000㎡ 미만인 것	구의면적이 300,000㎡ 이상 2,000,000㎡ 미만인 것	구의면적이 200,000㎡ 이상 2,000,000㎡ 미만인 것	구의면적이 300,000㎡ 이상 2,000,000㎡ 미만인 것
	해당사업의 범위	해당사업의 범위	해당사업의 범위	해당사업의 범위	해당사업의 범위
	해당사업의 범위	해당사업의 범위	해당사업의 범위	해당사업의 범위	해당사업의 범위

※ 비 고

- (1) 위 표에서 “도심지역”이라 함은 업무활동이 활발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이하 제2호에서 같다).
- (2) 위 표에서 “외곽지역”이라 함은 도심지역을 제외한 시계내 지역과 교통권역을 말한다(이하 제2조에서 같다).
- (3) 위 표에서 “기타지역”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이하 제2호에서 같다).

나. 기존사업의 확장

- (1) 기존사업의 확장인 경우에는 확장부분을 포함한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규모(최저규모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규모)의 20퍼센트,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규모(최저규모가 없는 경우에는 확장 당시의 규모)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확장하는 경우를 각각 제외한다.

2.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별 심의대상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대상시설중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또는 사업을 새행하고자 하는 자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의 신축

용도구분	건축물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대상			
			서울특별시		기 타 지 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1) 공동 주택	아파트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20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00,000㎡ 이상 1,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00㎡ 이상 1,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0㎡ 이상 1,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00,000㎡ 이상 1,200,000㎡ 미만인 것
(2)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6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4,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6,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3,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3) 의료 시설	병원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2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0,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4) 업무 시설	일반업무시설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용도구분	건축물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대상			
			서울특별시		기타 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5) 관람 집회 시설	(가) 공연장·집 회장(예식 장을 제외 한다)·관람 장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6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나) 예식장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6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6) 전시 시설	(가) 전시장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6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나) 동·식물원	부지면적이 600,000㎡ 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5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7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5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7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7)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 소매시장(백 화점·쇼핑센 타를 제외한 다)·상점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6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용도구분	건축물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대상			
			서울특별시		기타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나)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6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3,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4,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3,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4,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8)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관광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2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0,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9) 위락 시설	일반유흥음식 점·무도유흥 음식점·특수 목욕장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6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10) 자동차 관련 시설	차고·세차장· 자동차매매장 ·자동차계 학원	부지면적이 120,000㎡ 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15,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20,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7,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부지면적이 15,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11) 통신 촬영 시설	촬영소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용도구분	건축물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대상			
			서울특별시		기 타 지 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12) 공장	공해공장·일 반공장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60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0㎡ 이상 6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30,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13) 교육 연구 시설	(가)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2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0,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0㎡ 이상 120,000㎡ 미만인 것
	(나) 연구소· 도서관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14) 창고 시설	창고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8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30,000㎡ 이상 28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0㎡ 이상 28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8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40,000㎡ 이상 280,000㎡ 미만인 것

용도구분	건축물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대상			
			서울특별시		기타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15)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휴게소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6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5,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7,000㎡ 이상 60,000㎡ 미만인 것
(16) 기타	(1) 내지 (15)의 건축물외의 건축물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0㎡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15,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건축연면적 의 합계가 2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것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목의 구분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WA)가 10,000㎡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 건축물내의 가목의 (1) 내지 (16)의 각 용도 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

(1)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대상

$$WA = 1/120A_1 + 1/6A_2 + 1/12A_3 + 1/20A_4 + 1/6A_5 + 1/6A_6 + 1/6A_7 + 1/60A_8 + 1/6A_9 \\ + 1/6A_{10} + 1/12A_{11} + 1/6A_{12} + 1/12A_{13} + 1/20A_{14} + 1/60A_{15} + 1/12A_{16} + 1/20A_{17} \\ + 1/28A_{18} + 1/6A_{19} + 1/20A_{20}$$

(2)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가) 서울특별시 도심지역

$$WA = 1/10A_1 + 5/2A_2 + 2/3A_3 + 1/2A_4 + 2A_5 + 10A_6 + 2A_7 + 1/5A_8 + 2A_9 + 10/3A_{10} \\ + 2/3A_{11} + 2A_{12} + 2/3A_{13} + 1/2A_{14} + 1/5A_{15} + A_{16} + 1/2A_{17} + 1/3A_{18} + 2A_{19} \\ + 1/2A_{20}$$

(나) 서울특별시 외곽지역

$$\begin{aligned} WA = & 1/15A_1 + 5/3A_2 + 1/2A_3 + 1/3A_4 + 10/7A_5 + 1/7A_6 + 10/7A_7 + 1/7A_8 + 10/7A_9 \\ & + 5/2A_{10} + 1/2A_{11} + 10/7A_{12} + 1/2A_{13} + 1/3A_{14} + 1/7A_{15} + 2/3A_{16} + 1/3A_{17} \\ & + 1/5A_{18} + 10/7A_{19} + 1/3A_{20} \end{aligned}$$

(다) 기타지역 도심지역

$$\begin{aligned} WA = & 1/7A_1 + 10/3A_2 + A_3 + 2/3A_4 + 2A_5 + 10A_6 + 2A_7 + 1/5A_8 + 2A_9 + 10/3A_{10} + A_{11} \\ & + 2A_{12} + 10/7A_{13} + 2/3A_{14} + 1/3A_{15} + A_{16} + 2/3A_{17} + 1/2A_{18} + 2A_{19} + 2/3A_{20} \end{aligned}$$

(라) 기타지역 외곽지역

$$\begin{aligned} WA = & 1/10A_1 + 2A_2 + 2/3A_3 + 1/2A_4 + 10/7A_5 + 20/3A_6 + 10/7A_7 + 1/7A_8 + 10/7A_9 \\ & + 5/2A_{10} + 2/3A_{11} + 10/7A_{12} + 2/3A_{13} + 1/2A_{14} + 1/5A_{15} + 2/3A_{16} + 1/2A_{17} \\ & + 1/4A_{18} + 10/7A_{19} + 1/2A_{20} \end{aligned}$$

※ 비 고

A₁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공동주택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₂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종교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₃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의료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₄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업무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₅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공연장·집회장(예식장을 제외한다)·관람장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₆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예식장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₇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전시장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₈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동·식물원의 부지면적의 합계(㎡)

A₉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도매시장·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타를 제외한다)·상점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₁₀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백화점·쇼핑센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₁₁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숙박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₁₂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위락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₁₃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자동차관련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

- A₁₄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통신촬영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m²)
- A₁₅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공장의 건축연면적의 합계(m²)
- A₁₆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의 건축연면적의 합계(m²)
- A₁₇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연구소·도서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m²)
- A₁₈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창고의 건축연면적의 합계(m²)
- A₁₉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관광휴게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 A₂₀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기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m²)를 말한다.

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 (1)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후의 건축물이 단일용도일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후의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가목의 규정에 의한다.
- (2)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후의 건축물이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후의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 (3) (1) 및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 신축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규모의 20퍼센트,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규모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각각 제외한다.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9조의7제2항 관련)

용도	지역	서울특별시		기타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
1. 병원		1.49	1.00	1.22	0.82
2. 업무시설		1.00	0.75	0.82	0.61
3.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집회장(예식장을 제외한다)·관람장		3.73	2.49	3.04	2.03
나. 예식장		4.48	2.99	3.65	2.44
4. 전시시설		3.73	2.49	3.04	2.03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타를 제외한다)·상점		4.97	2.99	4.05	2.44
나. 백화점·쇼핑센타		5.46	3.28	4.45	2.67
6. 숙박시설		1.49	1.00	1.22	0.82
7. 위락시설		4.97	2.99	4.05	2.44
8. 자동차관련시설		1.49	1.00	1.22	0.82
9. 통신촬영시설		1.00	0.75	0.82	0.61
10. 공장		0.49	0.30	0.40	0.24
11.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1.87	1.49	1.52	1.21
나. 연구소·도서관		1.00	0.75	0.82	0.61
12. 창고시설·저장시설		0.75	0.37	0.61	0.30
13. 관광휴게시설		3.73	2.49	3.04	2.03
14. 운수시설		4.43	3.43	3.61	2.80
15. 운동시설(골프연습장·헬스클럽을 포함한다)		2.54	1.96	2.07	1.60
16. 기타		1.00	0.75	0.82	0.61

※ 비 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부표에 의한다.
2. “기타지역”이라 함은 부담금은 부과대상 지역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 都市交通整備促進法施行令 改正理由 ▶

都市交通促進法이 改正(1990.1.13, 法律第4221號)됨에 따라 同 改正法律에서 委任한 交通誘發負擔金の 賦課對象·賦課基準 및 徵收方法과 交通影響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機能, 交通影響 再評價의 사유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現行 規定의 施行上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改善·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交通影響評價 실시후 事業의 施行 또는 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深刻한 交通上의 문제점이 發生한 경우에는 市長등이 地方交通影響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交通影響 再評價의 실시여부를 決定하도록 함(令 第9條의4).

나. 交通誘發負擔金の 賦課對象은 都市交通整備地域 중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市(交通 圈域에 포함되는 市 제외)에 있는 바닥面積의 合計가 1千제곱미터 이상의 施設物로 하되 市長등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最低面積을 100 分の 50의 범위안에서 調整할 수 있도록 하고, 交通誘發負擔金の 非賦課對象은 國家·地方自治團體등의 所有施設物, 住居用 施設物, 宗教施設 및 教育施設등으로 함(令 第9條의5 및 9條의6).

다. 單一用途 施設物의 交通誘發負擔金은 施設物 各層의 바닥面積의 合計에 單位負擔 金(3.3제곱미터당 1千원) 및 交通誘發關係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複合用途 施設物의 交通誘發負擔金은 用途別 交通誘發負擔金を 合算한 금액으로 함(令 第9條의7).

라. 中央交通影響審議委員會는 委員長·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 로, 地方交通影響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각각 구성하고, 交通影響評價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審議를 담당하도록 함(令 第19條의2 및 第20條).

마. 交通影響評價의 대상이 되는 事業 및 施設의 最低規模를 下向調整하여 同 評價對 象을 擴大하고, 同 評價對象에 대한 交通影響審議業務를 中央交通影響審議委員會 및

地方交通影響審議委員會로 구분하여 정하며, 同 評價對象을 都心地域과 外廓地域으로 細分함(令 別表 1).

바. 交通誘發負擔金の 賦課對象인 施設物은 그 用途에 따라 業務施設·宿泊施設 및 販賣施設등의 16個로 구분하고, 동 賦課對象 施設物에 대하여는 서울特別市 및 기타 地域의 都心地域 및 外廓地域으로 각각 구분한 후 각각의 用途 및 地域에 따라 最高 5.46(서울特別市 都心の 百貨店·쇼핑센터)에서 最低 0.24(기타 地域 外廓의 工場)까지의 交通誘發係數를 정함(令 別表 2).

〈법제처 제공〉